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

- 볼프강 후버의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 연구

김성수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인권과 평화: 교회의 책임 영역

1. 시대 변화 속 교회의 역할
2. 책임의 신학적 토대

III. 정의로운 평화의 개념과 특징

1. 개념의 발전과 기본 방향
2. 평화와 사회 정의
3. 평화를 위한 법의 역할
4. 평화를 위한 정치의 역할

IV. 인권과 평화를 위한 책임 이론

1. 폭력의 감소와 인권
2. 부자유와 극복과 인권
3. (빈곤의 감소를 위한) 사회 정의의 증진과 인권
4.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인권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07>

• ABSTRACT •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or Human Rights and Peace: A Study
on Wolfgang Huber's Concept of Just Peace

Kim, Sungsoo (Lecture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has its purpose on analyzing character of Wolfgang Huber's concept of just peace and thereby clarifying responsibility and task of the church for human rights and peace. In connection with Dietrich Bonhoeffer reflected Huber the theological basis for the role of the church and explained with this concept concrete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eace. He emphasized that the minimization of violence, unfreedom, poverty and the respect of cultural diversity enable the promotion of peace and social justice. This effort also cause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s concept is the integrated responsibility theory for human rights and peace. Church has to strive with this concept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nd peace.

Key words: Wolfgang Huber, Social Ethics, Public Church, Human Rights, Just Peace

I. 들어가는 말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독일 개신교 사회 윤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신학자다.¹⁾ 인권과 평화는 그의 핵심 연구 주제다.²⁾ 1968년부터 후버는 이를 주제화했던 개신교 신학연구소(Forschungsstät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 이하 FEST)의 연구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신학적 사고를 정립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권과 기독교 신앙의 상응과 차이에 주목하는 인권 해석 방법론을 제시했고,³⁾ 1990년대 초반에는 인권의 보편적 성격과 이를 토대로 한 문화,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⁴⁾ 법 윤리를 깊이 연구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 후버는 인권이 법의 도덕적 기초로 인식되고, 증진되어 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⁵⁾ 인권뿐 아니라 평화도 그의 중요 관심사였다. 그는

-
- 1) 후버(1942-)는 튀빙엔 대학에서 박사 학위(1966),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자격(1972)을 취득한 뒤 마르부르크 대학(1980-1984)과 하이델베르크 대학(1984-1994)에서 윤리학 담당 교수로 재직했다. FEST(1968-1980)의 연구원이 된 이후 교회의 공적 실존과 책임성에 주목하며, 신학적 인권론, 법 윤리, 정치 윤리, 평화 윤리, 사회 정의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교회의 감독(1994-2009)과 독일개신교협의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이하 EKD)의 의장(2003-2009)으로 일하며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를 실제 교회 행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켰다. 그는 뛰어난 연구 업적과 행정직의 경험을 통해 독일 사회 윤리학의 흐름을 주도했고, 은퇴한 이후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Philipp Gessler, *Wolfgang Huber. Ein Leben für Protestantismus und Politik*, Freiburg 2012, 274f.
 - 2)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후버의 교회론을 그의 윤리의 기초로 규정하고, 인권, 법, 정치, 평화, 정의 등에 관한 그의 사고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했다. Sungsoo Kim, *Menschenrechte sichern durch gerechten Frieden - Der sozialethische Ansatz von Wolfgang Huber*, (Dissertation. Ruhr-Universität Bochum, 2019).
 - 3) Wolfgang Huber/Heinz Eduard Tödt,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hen Welt*, München 1977, 162-175.
 - 4) Wolfgang Huber, *Die tägliche Gewalt. Gegen den Ausverkauf der Menschenwürde*, Freiburg 1993, 151-161.

FEST의 연구원 시기부터 평화 연구에 매진했고,⁶⁾ 1970년대부터 평화 윤리와 평화 정책을 주제화하며 냉전 시대 평화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탐구했다.⁷⁾

인권과 평화에 대한 후버의 관심은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개념적 접근뿐 아니라 이를 위한 교회의 책임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후버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논구했고,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위한 실제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그가 발전시킨 “정의로운 평화”(gerechter Friede)의 윤리에 집약되어 있다. 이 윤리적 구상은 본질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평화의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신학적 방향의 제시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권의 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통합적 책임 이론에 해당한다.

후버의 구상은 세계 곳곳에 상존하는 인권 침해와 무력 분쟁을 목격하고 있는 교회에게 그 책임과 과제를 명확히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그의 이론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과 그 실현을 돕는 구체적 전략을 발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후버가 인권과 평화에 관심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가 밝힌 교회 역할의 신학적 토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발전시킨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가 지닌 특징과 기본 방향을 논구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책임 이론으로서의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5)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2006, 285-293.

6) Wolfgang Huber/Georg Picht, *Was heißt Friedensforschung?*, Stuttgart/München 1971.

7) Wolfgang Huber/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Stuttgart/Berlin/Köln 1990.

II. 인권과 평화: 교회의 책임 영역

1. 시대 변화 속 교회의 역할

교회가 인권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은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계몽주의적 사고에 토대를 두고 발전된 인권의 이념은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반기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⁸⁾ 또한 이것은 모든 인간이 초국가적, 주체적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 그래서 인권의 이념은 교회로부터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었다.⁹⁾ 그러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었던 제2차 세계 대전의 경험을 통해 인권은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고,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 1966년의 국제 인권 규약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기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인권은 1949년 독일 기본법의 토대를 형성하며, 국가의 기본 과제로 인식되었다. 인권 보장이 국내외적 관심사가 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교회의 동참이 요구되었고, 인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긴급한 사안이 되었다.¹⁰⁾

비교적 최근에 교회의 관심사가 된 인권과 달리 평화는 구약 시대부터 주목을 받던 주제였다. 어거스틴(Augustin)은 평화가 질서의 안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선으로 여겨지며, 지향되어야 함을 설명했다.¹¹⁾ 그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추구되어야 할 선한 것으로 간주했

8)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282.

9) Wolfgang Huber/Heinz Eduard Tödt, *Menschenrechte*, 39.

10) 후버 외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트루츠 렌토르프(Trutz Rendtorff), 마르틴 호네커(Martin Honecker) 등의 사회 윤리학자들이 1970년대 초반부터 인권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호남신학대학교 김형민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에서 몰트만, 렌토르프 등이 제시한 인권 이론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 이론이 지닌 약점을 또한 날카롭게 지적했다. Ibid., 64-73,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 현대인권신학의 동향과 전망』(서울: 북코리아, 2011), 95-213.

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정치 권력이 이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¹²⁾ 교회가 평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온 종교 전쟁 이후 평화의 보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나폴레옹과 맞섰던 해방 전쟁과 독불 전쟁, 20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평화를 완벽히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위험성의 제거와 평화의 실현은 핵 시대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고, 국가의 무력 사용을 견제하는 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2. 책임의 신학적 토대

이러한 배경에서 후버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사회와 국가는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 교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사회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교회는 사회 현실의 개선에 기여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¹³⁾ 이를 위해 교회는 국가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정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비판, 견제, 정치적 저항에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적 영역에 소속되어 이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교회(öffentliche Kirche)이다.¹⁴⁾ 교회는 정치적 행동을 위한 기준을 필요

11) Augustinus, *Der Gottesstaat. De civitate Dei*. Systematischer Durchblick in Texten, hg. v. H. U. von Balthasar, Einsiedeln 1982, 250f.

12) Martin Luther, "Von weltlicher Obrigkeit, wie weit man ihr Gehorsam schuldig sei", in: Ders., *Martin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Bd. 4*, hg. v. K. Bornkamm/G. Ebeling, Frankfurt a. M. 1982, 48.

13) Wolfgang Huber, *Kirche und Öffentlichkeit*, Stuttgart 1973, 47f.

14) 김성수, "공적 교회의 개념과 책임적 과제 - 볼프강 후버의 교회론 연구", 『신학사상』 제185호 (2019), 158-160.

로 한다. 후버는 이것을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사고와 연결하여 인권과 평화로 이해했다.

본회퍼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고백 교회(Bekennende Kirche)¹⁵⁾ 활동에 동참한 신학자다. 이에 앞서 그는 자신의 강의와 논문을 통해 정치 권력의 교회 질서에 대한 간섭과 유대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1932년 베를린 대학에서 행한 『교회의 본질』(Das Wesen der Kirche)이란 제목의 강의에서 본회퍼는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설교의 책무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평화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¹⁶⁾ 두 영역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교회가 지닌 선포의 자유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질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교회는 국가에 저항해야 한다.¹⁷⁾ 또한 본회퍼는 1932년 발표한 논문인 『교회란 무엇인가?』(Was ist Kirche?)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것은 정치적 영역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교회의 선포는 국가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정치적 실존을 지니고 있다.¹⁸⁾

그 외에도 본회퍼는 1933년 발표한 논문인 『유대인 문제 앞의 교회』(Die Kirche vor der Judenfrage)에서 유대인 상점에 대한 거부와 아리안 조항의 시행을 지시한 나치 정권을 비판하며,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설명

15) Christoph Strohm, *Die Kirchen im Dritten Reich*, München 2017, 12-15.

16) Dietrich Bonhoeffer, "Das Wesen der Kirche", in: Ders., *Dietrich Bonhoeffer Werke 11. Ökumene, Universität, Pfarramt 1931-1932*, hg. v. E. Amelung/C. Strohm, Gütersloh 1994, 302.

17) Ibid., 303.

18) Dietrich Bonhoeffer, "Was ist Kirche?", in: Ders., *Dietrich Bonhoeffer Werke 12. Berlin 1932-1933*, hg. v. C. Nicolaisen/E. A. Scharfenorth, Gütersloh 1997, 238.

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기본 과제는 **질서와 법을 보호하는 것**(für Ordnung und Recht sorgen)이다.¹⁹⁾ 만약 국가가 이 역할을 부족하게 혹은 과도하게 수행할 경우 교회는 정치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교회는 먼저 국가 행위의 정당성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²⁰⁾ 그런 의미에서 본회퍼에게 교회의 정치적 행동은 국가가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보장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본회퍼의 사고에 나타난 국가의 기본 과제에 주목한 후버는 법과 질서의 개념을 그 발생 시기부터 정치 권력의 역할 수행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간주되었던 **인권**과 냉전 시대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던 **평화**의 문제로 치환시켰다.²¹⁾ 이를 통해 후버는 국가가 인권과 평화를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지니고 있고, 교회는 국가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에 근거한 비판, 견제, 정치적 저항을 통해 도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과 평화는 교회의 책임 영역에 해당한다. 후버는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를 통해 이의 보장을 위한 정치적, 신학적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III. 정의로운 평화의 개념과 특징

1. 개념의 발전과 기본 방향

“정의로운 평화”는 사실 후버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 아니다. 1983년

19) Dietrich Bonhoeffer, “Die Kirche vor der Judenfrage”, in: Ders., *Dietrich Bonhoeffer Werke 12. Berlin 1932-1933*, hg. v. C. Nicolaisen/E. A. Scharfenorth, Gütersloh 1997, 351.

20) Ibid., 353f

21) Wolfgang Huber, *Kirche*, Stuttgart 1979, 177f.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Ökumenischer Rat der Kirchen)의 총회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교회의 중요 과제로 규정했다.²²⁾ 1989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대회는 이 기본 노선이 통합되고, 구체화된 “정의로운 평화”의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²³⁾

이 개념이 자신의 평화 윤리적 사고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버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 발전시켰다. EKD의 공적 책임 위원회(Kammer für öffentliche Verantwortung)의 회원(1973-1994)으로 활동하던 그는 이 위원회가 1994년 발간한 평화 문서인 『평화를 향한 발걸음』(Schritte auf dem Weg des Friedens)에서 “정의로운 평화”의 기본 윤곽을 설명했다,²⁴⁾ 그가 EKD의 의장으로 선출된 후 2007년 발간한 평화 백서인 『하나님의 평화로부터의 삶 - 정의로운 평화의 보호』(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를 통해 이 개념의 특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다.²⁵⁾ 후버의 구상은 이후 독일 교회가 지향하는 기본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후버가 체계화시킨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개념은 평화를 위해 비폭력과 폭력이 모두 필요하다

22) Walter Müller-Römheld (Hg.), *Bericht aus Vancouver 1983. Offizieller Bericht der Sechsten Vollversammlung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24. Juli bis 10. August 1983 in Vancouver/Kanada*, Frankfurt a. M., 1983, 261f.

23)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Ökumenische Versammlung für Gerechtigkeit, Frieden und Bewahrung der Schöpfung Dresden, Magdeburg, Dresden*, EKD-Texte 38, Hannover 1991, 32.

24)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Schritte auf dem Weg des Friedens. Orientierungspunkte für Friedensethik und Friedenspolitik* (1994), EKD-Texte 48, Hannover ³2001.

25) 후버는 자신의 평화 윤리적 구상을 2007년의 평화 백서에 투영시켰다. 그는 서문에서 자신의 생각과 백서의 노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2007, 8f.

는 것을 강조한다. 후버는 평화를 위해 비폭력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폭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시대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냉전 시대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평화 윤리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 국가 질서의 붕괴, 내전의 발발, 대량 학살의 발생 등이 큰 문제가 된 1990년 이후로 무력 충돌과 인권 유린의 종결을 위한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이 국제 사회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평화를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성찰이 평화 윤리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후버는 폭력의 사용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²⁶⁾ 평화는 법질서의 안정 상황에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은 법질서를 재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폭력의 사용은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오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용의 대상과 방법이 면밀하고, 세심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의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rechtserhaltende Gewalt)의 윤리는 후버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평화를 위한 비폭력적 노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²⁷⁾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는 전쟁의 방지뿐 아니라 사회

26) 후버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한 평화 증진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과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질서의 안정을 도와 평화의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생각은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갖고, 전쟁의 정당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의로운 전쟁”(gerechter Krieg)의 이론과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Wolfgang Huber, “Rückkehr zur Lehre vom gerechten Krieg? Aktuelle Entwicklungen in der evangelischen Friedensethik”, in: ZEE 49 (2005), 127.

27)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정의로운 평화” 개념의 기본 윤곽을 설명했다. 그는 평화와 사회 정의가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원칙적 평화주의 대신 법질서를 위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이 개념을 한국 상황에 선구적, 성공적으로 적용시켰다. 유석성, 『정의와 평화윤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149-174.

정의의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은 평화의 질적 증진에 관심을 기울인다. 평화와 사회 정의의 종합적 지향은 법과 정치의 도움을 통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보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전략적 관점을 발견하기 위해 이 기본 방향이 중점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2. 평화와 사회 정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기에 평화는 전쟁과 갈등이 종결된 법적 상태를 의미했다.²⁸⁾ 이후 평화는 일반적으로 무력 충돌이 부재한 상태로 이해되었다. 1964년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당시까지 평화를 뜻하던 전쟁의 부재가 소극적 의미의 평화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통합과 협력이 실현된 상태를 뜻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²⁹⁾ 갈통은 1969년 이후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사회 정의의 실현과 연결하여 정의로운 질서 속에서의 통합적 상태로 이해했다.

후버는 갈통의 생각과 유사하게 평화를 전쟁의 부재와 사회 정의 실현의 종합 개념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평화를 일시적인 상태로 파악했던 갈통과 달리 후버는 이것을 비인간적인 상황이 극복되고, 개선되는 삶의 질 향상의 과정으로 이해했다.³⁰⁾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는 일시적인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일

28) Wolfgang Huber, Art, Frieden. Kirchengeschichtlich und ethisch, in: *TRE* 11 (1983), 618.

29) Johan Galtung, "Friedensforschung", in: Ekkehart Krippendorff (Hg.), *Friedensforschung*, Köln/Berlin 1968, 531, Ders., "Gewalt, Frieden und Friedensforschung", in: Dieter Senghaas (Hg.),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 a. M. 1971, 100f.

30) Wolfgang Huber/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22.

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항구적 목표다.

이 평화의 과정은 특별히 폭력(Gewalt), 부자유(Unfreiheit), 빈곤(Not)의 최소화를 통해 구체화된다.³¹⁾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와 함께 요구되는 빈곤의 감소는 후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자연의 보호를 통해 가능하다. 자연의 훼손과 자원의 남용은 현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며,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생태 환경의 보존은 무력 충돌의 방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빈곤의 최소화는 또한 사회 정의의 증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자원이 풍족하여도 분배와 접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버가 말한 평화의 과정은 전쟁의 부재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함의하고 있다.

후버는 2007년의 평화 백서에서도 평화를 사회 정의와 연결된 “정의로운 평화”의 과정으로 이해했다.³²⁾ 이것은 평화와 정의의 결합(시 85:11)을 설명하는 성서의 평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³³⁾ 이 평화의 과정은 그가 기존에 언급했던 비인간적인 상황의 극복을 통해 실현된다. 여기에 더하여 후버는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Anerkennung kultureller Vielfalt)을 평화의 조건에 포함시켰다.³⁴⁾ 다름의 인정은 사회 속 공존을 위한 중요 전제이다. 이를 위한 문화, 종교간 대화는 평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3. 평화를 위한 법의 역할

후버는 냉전 시대부터 평화의 과정이 법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31) Ibid., 22-24.

32)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54.

33) Ibid., 50.

34) Ibid., 56.

판단했다.³⁵⁾ 폭력의 감소와 사회 정의의 보장은 국내법이라는 강제적 규범을 통해 관철된다. 국제법도 전쟁의 방지와 정의로운 경제, 사회 질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법은 평화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버는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를 법과 밀접히 결합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2007년의 평화 백서에서 특별히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법은 “집단 안보”(kollektive Sicherheit)의 질서를 통해 폭력을 감소시킨다.³⁶⁾ 유엔 헌장의 제2조 제4항은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만약 유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군사적 공격을 당했을 경우 다른 국가들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나타난 자위권에 근거하여 피해 국가를 비군사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도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집단 안보”는 국제 사회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군사적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다. 국제법은 이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켜 빈곤이 극복되도록 만든다. 이것은 또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을 법적으로 촉진시켜 문화적, 종교적 갈등을 감소시킨다.³⁷⁾

4. 평화를 위한 정치의 역할

후버는 이와 함께 정치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냉전 시대부터 평화의 실현이 정치 권력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역할은 전쟁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전쟁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도록 만들며, 평화로운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도록 만드는 평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³⁸⁾ 후버는 정치 권력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

35) Wolfgang Huber/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129f.

36)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58f.

37) Ibid., 59-65.

을 기획, 추진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 비판을 가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평화 윤리의 역할을 강조했다.³⁹⁾

기독교 평화 윤리는 후버에 따르면 화해와 원수 사랑의 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제의 논리”(Logik des Ausschlusses)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평화론(pax Romana)은 타자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신의 평화만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 폭력의 사용이 정당한 것,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에 반해 “포용의 논리”(Logik des Einbezugs)에 근거한 성서의 평화론은 타자의 평화가 자신의 평화의 전제임을 강조한다.⁴⁰⁾ 타자의 평화를 위해 폭력의 사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서 속 평화 개념(shalom)은 인간의 공존을 목표로 삼았고, 화해의 은혜에 근거를 둔 신약 성서 속 평화 개념(eirene)과 관련하여 바울은 화해의 봉사를 교회의 기본 과제로 규정했다(고후 5:18).

후버도 화해를 기독교 평화 윤리의 출발점으로 이해했다. 그에게 화해는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포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⁴¹⁾ 화해의 윤리는 그러므로 원수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다. 타자만이 자신에게 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타자에게 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원수에 대한 적대감이 극복될 수 있다.⁴²⁾ 후버에 따르면 이 화해와 원수 사랑의 윤리는 기독교적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평화 정책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안전 보장과 평화 증진은 국가 간의 반목 가운데 이뤄질 수 없고, 오직 서로 간의

38) Wolfgang Huber/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13.

39) 후버는 평화 윤리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윤리의 한 형태로 이해했다. Ibid.

40) Wolfgang Huber, “Welcher Frieden? Vertrauensbildung im Ost-West-Konflikt und die Aufgaben der Kirchen”, in: *epd-Dokumentation* 30 (1988), 16.

41) Wolfgang Huber/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320.

42) Wolfgang Huber, “Welcher Frieden? Vertrauensbildung im Ost-West-Konflikt und die Aufgaben der Kirchen”, 17.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공동 안보”(gemeinsame Sicherheit)는 군사 위협의 감소와 군비 축소의 실현을 위해 이웃 국가, 특히 적대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개념이다.⁴³⁾ 그러나 이것은 각 국가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념이 통일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오히려 각 국가가 정치적 방향성을 유지하며, 공동 관심사인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후버는 “공동 안보” 개념을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현실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했다.⁴⁴⁾

후버는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 안에서도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냉전 시대가 끝난 뒤 발생한 인종 학살과 인권 침해를 통해 개인의 안전 보장이 국제 사회의 긴급한 사안이 되었다. 1994년도 유엔 개발 계획 보고서는 질병, 환경 파괴, 범죄 등 일상의 위협 속 개인의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인간 안보”(menschliche Sicherheit)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⁴⁵⁾ 폭력과 빈곤에서의 보호와 인권의 보장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 안보” 개념은 폭력, 부자유, 빈곤의 감소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을 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평화”의 기본 노선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의 추구는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이것은 정치적 노력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개인 안전의 위협은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개념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평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공동 안보” 개념의 연장 선상에 놓여 있다.

43) Wolfgang Huber/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315.

44) Ibid., 326.

45)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g.),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1994, 22f.

이 외에도 후버는 비군사적 방법을 통해 국가 간 무력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시민적 갈등 조정”(zivile Konfliktbearbeitung)의 역할을 강조했다.⁴⁶⁾ 시민은 공적 대화에 참여하여 정치 권력이 평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 실행하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러한 시민의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 평화 교육과 평화 연구가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은 다른 국가의 시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적 갈등 조정은 그러나 국가 기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외교, 정치적 노력을 통해 국가 간 무력 충돌과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구적 평화의 실현은 시민과 국가가 공동 노력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달려있다.

IV. 인권과 평화를 위한 책임 이론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는 평화와 사회 정의의 증진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폭력, 부자유, 빈곤이 최소화되며,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과정적 노력은 평화의 실현뿐 아니라 인권의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1. 폭력의 감소와 인권

“공동 안보”와 “인간 안보” 개념에 기반을 둔 정치적 노력은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시민적 갈등 조정도 시민적, 국가적 평화 노력을 통해 폭력의 감소에 일조한다. 이를 통해 전쟁과 무력 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인종 학살, 고문과 같은 인권 침해의 현상이 예방될 수 있

46)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108-114.

다.⁴⁷⁾

2. 부자유의 극복과 인권

13세기 영국의 자유 헌장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신분적, 집단적 자유 요구를 통해 생겨났다. 17세기 인신 보호법과 권리 장전도 이 연장 선상에서 영국 시민의 자유권을 그 내용으로 삼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보편적 자유권이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 장전과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이처럼 자유에의 요구는 현대적 인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⁴⁸⁾ 그러나 세계 곳곳에 상존하는 폭압적 정치 권력과 마주하여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때 자유 보호의 노력은 정치적 자유권의 보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사회 속 동등한 처우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요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등권과 참여권의 축진이 또한 가능해진다.⁴⁹⁾

3. (빈곤의 감소를 위한) 사회 정의의 증진과 인권

부정의는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 정의는 이 불평등의 극복을 통한 상호 인정 관계의 실현을 뜻한다. 이것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화의 분배가 잘 이뤄져야 한다.⁵⁰⁾ 여기에 더하여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장려되어야 한다.⁵¹⁾ 개인은 참여를 통해 자신의 능력

47) Ibid., 18.

48) Wolfgang Huber/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332f.

49)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55.

50) Ibid., 61f.

51)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zur Armut in Deutschland, Gütersloh 2006, 43f.

을 발휘하며,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역량이 증진되어야 한다.⁵²⁾ 특히 교육과 의료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얻도록 만든다. 이것은 개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사회 정의는 분배의 정의(Verteilungsgerechtigkeit), 참여의 정의(Teilhabegerechtigkeit), 역량의 정의(Befähigungsgerechtigkeit)의 통합적 추구를 통해 실현된다. 이것은 인권의 보호로 이어진다. 먼저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 체계의 구축과 사회권의 보장에 일조한다. 또한 참여의 정의를 위한 노력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한 노동 조건, 실직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보장하는 노동권을 촉진시킨다.⁵³⁾ 그뿐 아니라 역량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선택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발전권의 증진에 기여한다.⁵⁴⁾

4.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인권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 출발점은 각 문화와 종교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⁵⁵⁾ 그러나 자기 정체성의 강화는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이어져선 안 된다. 오히려 자기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 상호 인정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지닌

52)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62-64.

53)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Gerechte Teilhabe*, 48f.

54)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63.

55) Wolfgang Huber, *Die tägliche Gewalt*, 69.

개인의 평등권과 차별 금지의 권리가 보장되며, 여기에 더하여 문화적 자유권도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⁵⁶⁾

이처럼 “정의로운 평화”의 과정은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의 실현에 기여한다.⁵⁷⁾ 이를 통해 이 개념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⁵⁸⁾ 결과적으로 이것은 평화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뿐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통합적 책임 이론이다.

V. 나가는 말

후버는 인권과 평화의 보장이 국가의 기본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회는 비판, 견제, 정치적 저항을 통해 국가가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과 평화는 교회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 교회는 인권 침해와 무력 충돌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임의 구현을 돕는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는 일차적으로 평화의 구축을 위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평화는 폭력, 부자유, 빈곤의 감소와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과정을 뜻한다. 법과 정치의 도움으로 현실화되는 이 과정은 외적 질서의 안정뿐 아니라 평화의 질적 증진을 가져온다. 이것은 또한 인권의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은 인종 학살, 고문과 같은 인권 침해의 발생을

56)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65.

57) 후버는 자유, 평등, 참여를 인권의 기본 구성 요소로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 요소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314.

58)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53f.

방지하고, 부자유의 감소를 위한 노력은 정치적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의 보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빈곤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 정의의 증진 과정은 사회권, 노동권, 발전권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는 평등권과 문화적 자유권의 보장을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로운 평화”의 과정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후버는 이 구상을 통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과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후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는 인권과 평화가 그 책임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제안한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이의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정의로운 평화”를 통해 구체화되는 이 노력⁵⁹⁾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실현되는 좀 더 인간적인 세상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59) 후버에 따르면 교회는 “정의로운 평화”를 통한 구체적 노력과 함께 교유의 역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설교와 성찬을 통해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대와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인은 인권과 평화의 증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현실 상황의 개선을 위해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기도는 정치적 노력을 상회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실제적 노력과 기도를 병행하며,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Ibid., 28-30.

참고문헌

- 김성수, “공적 교회의 개념과 책임적 과제 - 볼프강 후버의 교회론 연구”. 『신학사상』 제185호 (2019). 149-174.
-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 현대인권신학의 동향과 전망』 서울: 북코리아, 2011.
- 유석성, 『정의와 평화윤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 Augustinus, *Der Gottesstaat. De civitate Dei*. Systematischer Durchblick in Texten, hg. v. H. U. von Balthasar, Einsiedeln ²1982.
- Bonhoeffer, Dietrich, *DBW 11. Ökumene, Universität, Pfarramt 1931-1932*, hg. v. E. Amelung/C. Strohm, Gütersloh 1994.
- _____. *DBW 12. Berlin 1932-1933*, hg. v. C. Nicolaisen/E. A. Scharfenorth, Gütersloh 1997.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Hg.). *Ökumenische Versammlung für Gerechtigkeit, Frieden und Bewahrung der Schöpfung Dresden, Magdeburg, Dresden*, EKD-Texte 38, Hannover 1991.
- _____. *Schritte auf dem Weg des Friedens. Orientierungspunkte für Friedensethik und Friedenspolitik* (1994), EKD-Texte 48, Hannover ³2001.
- _____.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zur Armut in Deutschland, Gütersloh 2006.
- _____. *Aus Gottes Frieden leben - für gerechten Frieden sorgen*.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2007.
- Galtung, Johan. “Friedensforschung”, in: Ekkehart Krippendorff (Hg.). *Friedensforschung*, Köln/Berlin 1968.
- _____. “Gewalt, Frieden und Friedensforschung”, in: Dieter Senghaas (Hg.).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 a. M. 1971.
- Gessler, Philipp. *Wolfgang Huber. Ein Leben für Protestantismus und Politik*, Freiburg 2012.

- Huber, Wolfgang./Picht, Georg. *Was heißt Friedensforschung?*, Stuttgart/München 1971.
- _____. *Kirche und Öffentlichkeit*, Stuttgart 1973.
- _____/Tödt, Heinz Eduard.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hen Welt*, München 1977.
- _____. *Kirche*, Stuttgart 1979.
- _____. Art. Frieden. Kirchengeschichtlich und ethisch, in: *TRE* 11 (1983).
- _____. “Welcher Frieden? Vertrauensbildung im Ost-West-Konflikt und die Aufgaben der Kirchen”, in: *epd-Dokumentation* 30 (1988).
- _____/Reuter, Hans-Richard. *Friedensethik*, Stuttgart/Berlin/Köln 1990.
- _____. *Die tägliche Gewalt. Gegen den Ausverkauf der Menschenwürde*, Freiburg 1993.
- _____.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²2006.
- _____. “Rückkehr zur Lehre vom gerechten Krieg? Aktuelle Entwicklungen in der evangelischen Friedensethik”, in: *ZEE* 49 (2005).
- Kim, Sungsoo. *Menschenrechte sichern durch gerechten Frieden - Der sozialethische Ansatz von Wolfgang Huber*, (Dissertation, Ruhr-Universität Bochum, 2019).
- Luther, Martin. *Martin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Bd. 4*, hg. v. K. Bornkamm/G. Ebeling, Frankfurt a. M. 1982.
- Müller-Römheld, Walter (Hg.). *Bericht aus Vancouver 1983. Offizieller Bericht der Sechsten Vollversammlung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24. Juli bis 10. August 1983 in Vancouver/Kanada*, Frankfurt a. M. 1983.
- Strohm, Christoph. *Die Kirchen im Dritten Reich*, München²2017.
-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g.).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1994.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1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2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볼프강 후버가 주재화한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과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퍼의 사고를 바탕으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 역할의 신학적 토대를 설명한 후버는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를 통해 제시했다. 그는 폭력, 부자유, 빈곤의 감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평화와 사회 정의가 증진됨을 강조했다. 이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인권의 보장에 기여한다. 그런 점에서 이 윤리적 구상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통합적 책임 이론에 해당한다. 교회는 이를 토대로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볼프강 후버, 사회 윤리, 공적 교회, 인권, 정의로운 평화
